

제 호

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대 표 자:

3. 주 소:

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

< 변경 사항 >

변경신고일	내용	확인

< 행정처분 사항 >

행정처분일	내용	확인